

##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0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2년 12월 14일

근화제약주식회사

대표이사 페터 카일(Peter Keil)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
은행장 김 종 준